### [양식 제9호]

# 친양자입양취소신고서

※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, 선택항 해당번호에 "○"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**(00년)) 대한법률구조공단** 

구 분					야	부	-			양				모			
1		한글	(성)	/ (1	명)	본(한>	<b>(</b>			한글	(정)	/ (명)		본(한	:자)		
	성명	한자	(성)	/ (명)		출생연월일				한자	(성)	/ (명)		출생연	월일		
양		주민	민등토	·번호		-	•			주민등록번호			-				
친	등 록 기준지											•					
_	주소																
	성명	한글 (성		) / (閉)				본(한자)					주민등록번호				
2	0 0	한자		) /(병)		Ę		출생연월일							_		
친	등록기	기준	-ス]														
양	주	소															
자	종전의	성	(姓)	한글		한자	종전			]의 본(本) 한글			7_		한자		
	부활된		(姓)	한글	글 한										한자		
(아) 보고		(양)부		성명				등록									
								주민등록! 등록기 준				_					
		(%	<i>)</i> )모	성명				주민등록반						_			
<b>④</b> フ	타사항	-		I													
⑤재판확정일					년	<del>P</del>	1	Ģ	Ī		법원명						
			성	명			Ģ	① 또는	서명	주민	l등록t	호			_		
⑥신고인			자	격	1 소 저	기자	2	소의	상대	방	37E	-(자	격 :				)
			주	소													
			전	화							이메일						
⑦제출인			성	명							주민등-	록번	호		-		

## 작 성 방 법

- ※ 이 신고서는 「민법」 제908조의4에 따른 친양자 입양취소의 재판 또는 「입양특례법」 제16조에 따른 입양취소의 재판이 확정되어 친양자 입양취소신고를 하는 경우에 작성하여야 합니다.
- ※ 등록기준지: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.
- ※ 주민등록번호: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(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)를 기재합니다. ①란 및 ②란: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때에는 생연월일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.

③란: 천양자입양 전에 일반입양관계가 형성되었다면 천양자입양의 취소시에 종전 일반입양한 양부모관계가 부활합니다. ④란: 아래의 사항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.

- 신고사건으로 신분의 변경이 있게 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람의 성명, 생년월일, 등록기준지 및 신분변경의 사유 ⑦란: 제출자(신고인 여부 불문)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기재[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]

#### 첨부서류

#### ※ 아래 1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.

- 1. 친양자입양취소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,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각 1통.
- 2. 친양자입양취소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통.
- 3. 신분확인[가족관계등록예규 제23호에 의함]
-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: 신분증명서
-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: 제출인의 신분증명서
- 우편제출의 경우 :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
- ※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3항의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.
- 4. 사건본인이 외국인인 경우:국적을 증명하는 서면(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) 사본
- \*\*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,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.